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본입니다.

판 결

2014. 1. 14.

법원주사보 서 회



사 건 2013고정129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김성환

접 사 이정호(기소), 최리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판 결 선 고 2014. 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2. 6.경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해 8. 5.경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누구든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



2014-0033893493-35066

비밀소 함지을 마크트 됩니다.

1 / 8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삼성본관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하면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매월 약 5-6회 가량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2003. 8.경부터 2013. 7.초순경까지 계속하여 '삼성일반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상단에 '삼성일반노동조합' 마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은 제7조 제3항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제93조 제1호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한편, 제2장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소정의 심사와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신고서의 반려 또는 신고증의 교부를 하여야 하며, 제12조 제4항에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설립의 의미를 그 요건 규정으로써 명시하고 있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2014-0033893498-35066

헌법재판소 판례 제2014-0033893498-35066

2 / 8



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468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1574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2003. 2. 6.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21. 노동조합의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온 사실, 그런데 인천광역시장은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교부 후에 위 '삼성일반노동조합'이 인천광역시장의 규약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삼성일반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성일반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증 및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적법하게 설립된 '삼성일반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하위법령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2014-0033893493-35066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3/8



둘째, 일적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에 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위 규정을 어느 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자의 정책재량의 문제로 보면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500만 원 이하의



이 사건에서 인천광역시장은 '삼성일반노동조합'의 적법한 설립 후에 하위법령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립신고증 교부 후 발생한 설립신고 반려사유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위 통보처분의 적부·효력유무나 위 시행령 조항의 위헌·위법성 논란을



넷째, 단체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들을 보더라도, (1) 상법의 경우 제169조에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에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시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8조), 이와 같은 규정 형식에 있어서는 '회사'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즉시 회사 명칭 사용에 관한 금지의무가 발생하지만, (2) 정당법의 경우 제41조 제1항에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반면(제59조 제2항), 별도로 제41조 제4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등록취소된 정당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이를 어기는 경우의 형사벌이나 행정벌 규제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규정 형식 하에서는 정당법상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정당은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으며, 적법하게 등록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등록취소된 정당에게는 정당법상 명칭사용 금지의무가 부가되지만, 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벌은 물론, 행정벌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각 법률들은 각 입법목적에 따라 단체의 명칭 사용 제한에 있어 구구한 규정 형식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에 의하게 하고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도, 설립 이후에는 변경신고나 정기적인 통보의무만을 규정할 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에 관해서 어떠한 금지조항도 없고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동원한 규제조항도 없는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설립신고주의에 기반하여 노동조합 보호 목적의 최소한의 관리 감독만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에 명시적으로 금지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기한 행정관청의 통보에 의한 노동조합 명칭 사용 허부문제를 억지로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에 포함시켜 해석함으로써 위 법조항을 근거조항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의 취지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7조 3호의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사후적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까지도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통보처분의 적부·효력유무나 위 시



행령 조항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논할 것도 없이 그 자체로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까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명백히 벗어나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임수희 _____



2014-0038893493-35066

위판조 판시문 바코드입니다.

8 / 8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81
201호 (송내동)

김성환



422-816

2060247-344281

형사2단독

2013-230-1291-134

인 천 지 방 법 원 부 천 지 원

항소장 접수 통지서

사 건 2013고정129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파 고 인 김성환

위 사건에 관한 2014. 1. 9. 판결에 대하여 2014. 1. 15. 검사로부터 항소장이 제출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14. 1. 15.

법원주사보

서희곤

